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의7서식] <신설 2024. 8. 6.>

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

※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시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

신청자	성명(업체명)	전화번호
	주소	

증명서 발급내용	증명서 발급 번호 및 일자				
	발급대상자				
	임산물 소재지				
	수집기간				
	벌채목적	수집면적	증명수량(톤)	비고	
	m ²	수량(톤)	생산량		
			목재펠릿	목재칩	

신청내용	변경발급 사유(별첨 가능)				
	변경발급 증명수량		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지방산림청장

첨부서류	1.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원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확인	→	기안 결재	→	증명서 변경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	---	-------	---	--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, 지방산림청